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추경호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. 19. ~ 2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7항제1호 중 “제14조”를 “제14조, 제16조의2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·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비과세) ① ~ ⑥ (생략)	제4조(비과세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법 제4조제1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.	⑦----- ----- -----.
1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, 제10조의2, 제12조, 제12조의2, 제13조, 제14조, 제18조, 제18조의2, 제18조의3, 제19조제2항, 제29조의6, 제30조, 제30조의3, 제33조, 제63조, 제63조의2, 제64조, 제76조제1항, 제95조의2, 제98조의3, 제98조의5, 제99조의9, 제99조의11, 제104조의8제1항·제3항, 제104조의21, 제104조의24, 제104조의28, 제104조의31, 제118조의2,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, 제121조의13, 제126조의2, 제126조의6 및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	1. ----- ----- ----- 제14조, 제16조의2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의2. ~ 6. (생략)	1의2. ~ 6. (현행과 같음)
⑧ (생략)	⑧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211